[민원회신] 공사 등 계약서 공개, 전문 포함한 사본 공개해야

아파트관리신문 | 승인 2024.06.12 10:10 | 호수 1489

질의: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(계약서의 공개) 관련

관리소장이 바뀌면서 계약서 공개방법이 원본 복사본에서 안내문식으로 변경돼 공개되고 있다.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(계약서의 공개)의 법 취지에 적절한 것인지. <2024. 5. 5.>

회신: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

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,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 제27조 제3항 제1호의 정보(개인정보 관련)는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. 따라서 제27조 제3항 제1호의 정보는 제외한 계약서의 사본(전문 포함)을 공개함이 바람직할 것을 알린다. <2024. 5. 20.>

<국토교통부 제공>

아파트관리신문 aptnews@aptn.co.kr

저작권자 ©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